



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보강 및 환불 규정 안내

스스로 선택하고
함께 배우는
즐거운 학교

학부모님께

**※코로나19 감염병 법정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됨에 따라 5월 23일부터
자가격리기간 결석으로 인한 교육비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.**

-코로나19로 인해 결석시 5월 20일까지는 해당기간 교육비 환불이 되오니 각 부서 선생님께
꼭 말씀해주세요.

<이리백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보강 규정>

구분	내용	비고
보강하는 경우	1) 강사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강해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2) 강사의 불가피한 사정(결혼, 부모상, 교통사고, 천재지변 등)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	보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된 시간에 대해 일별계산하여 환불
보강하지 않는 경우	1) 법정 공휴일, 재량휴업일, 개교기념일, 천재지변 2) 학교 행사(현장학습, 방학일, 학사 일정 변경 등) 3) 학생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	

<이리백제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>

구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	비고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	※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	수강개시 이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	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수강받지 않은 날의 교육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도록 함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	환불하지 아니함	

- **사회재난(화재, 교통, 통신, 감염병 등 포함)** 등 국가재난(비상) 상황으로 학교장 휴강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.
- 자가진단 항목의 등교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환불은 불가하며 환불 규정 중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업을 포기한 경우에 따라 처리한다.
- 전학·장기입원·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,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.
- 총 수강 시간은 수강하는 월의 총 수강 시간을 말하며, 환불 금액의 산정은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(환불 요구, 취소 신청 등)을 기준으로 한다.

2022. 5. 19.

이리백제초등학교장